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소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445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최대주주등의 상장주식 평가방식 개편	3
2. 상장주식에 대한 물납허용	13

I. 개요

1. 이소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44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소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5. 9.

(3) 회 부 일 : 2025. 5.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상장된 유가증권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로부터 각 2개월간의 평균 시세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음.

한편 비상장주식은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2 대 3 혹은 3 대 2의 비율로 가중평가하고 있음. 이 경우 그 평가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의 80%를 평가가액의 하한선으로 정하고 있음(시행령 제54조제1항 단서).

그런데 상장주식의 경우 주가가 높을수록 세금도 증가하고, 주가가 낮을수록 세금이 낮아지게 되어, 낮은 주가가 상속·증여에 더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됨.

최대주주는 통상적으로 해당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경영권 승계작업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의 경우 사업적 목적 외의 석연치 않은 계열사간 주식매매 및 유상증자, 합병, 분할 등을 통해 주가 저평가를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아오곤 함. 결국 한국시장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 1미만의 저평가 주식이 넘쳐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상장사의 시세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같이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그 하한선은 순자산가치의 80%로 하고자 함.

아울러 상장사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 20% 가산세율을 삭제하여 상장주식의 시세가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경우에는 세금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또한 부득이하게 세금의 현금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용하고자 함(안 제63조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최대주주등의 상장주식 평가방식 개편(이소영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유가증권 등의 평가(제63조제1항) ○ 상장주식: -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매일 공표된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 비상장주식: -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 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등의 시가가 인정되는 경우 그 시가 - 보충적 평가방식: 시가 인정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가액 ①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 (부동산과다보유법인 2:3)로 가중평균한 가액 ② 최저한도: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 최대주주등의 주식 할증평가: -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에 100분의 20 가산 * 최대주주등: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	□ 최대주주등의 상장주식 평가 특례 ○ 일반 상장주식 - (현행과 같음) ○ 비상장주식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최대주주등의 상장주식: ① <u>최대주주등의 상장주식의 시가가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인 경우:</u>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식 적용. - <u>최대주주등의 주식 할증평가 미적용</u> ② <u>최대주주등의 상장주식의 시가가 순자산가치의 80% 이상인 경우:</u> - <u>상장주식의 평가방식 적용</u> - <u>최대주주등의 주식 할증평가 미적용</u>

* 이소영의원안 2025. 5. 9. 발의(의안번호 10445)

□ 개정안은 최대주주등¹⁾의 상장주식이 ① 저평가된 경우(시가가 순자산가치²⁾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대하여는 시가가 아닌 해당 기업의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한 평가방식(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시가로 평가하려는 것임.

또한, 최대주주등의 상장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의 적용은 배제하려는 것임.

□ 현행법³⁾에 따르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

1)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

2)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는 기업이 보유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Book-value Per Share)는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됨.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時價)에 따르도록 하되,

①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증권거래소에서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고,

② 비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등의 시가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가를 적용⁴⁾할 수 있으나, 시가 인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음.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⁵⁾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⁶⁾와 1주당 순자산가치⁷⁾를 3:2(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되,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평가 가액의 최저한도로 하고 있음.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6) 1주당 순손익가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7) 1주당 순자산가치: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한편, 최대주주등의 주식등⁸⁾에 대하여는 추가로 위 평가된 가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음⁹⁾.

이는 일반주주의 주식등과는 달리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그 가치를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관철하려는 것임.

□ 이와 같은 주식의 평가방식하에서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로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 즉 시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시 세제상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경영권 승계작업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의 경우 사업적 목적 외 석연치 않은 계열사 간 주식매매 및 유상증자, 합병, 분할 등을 통해 주식의 저평가를 유도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저평가 주식이 많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최대주주등의 상장주식이 ① 저평가된 경우, 즉 시가(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매일 공표된 거래소 최종 시세 가액의 평균액)가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주가순자산비율¹⁰⁾ 0.8배 미만)에 대하여는 시가가 아닌 해당 기업의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한 평가방식인 비상장주식에 적용되

8) 주식 또는 출자지분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Ratio) 기업의 현재 주가가 그 기업의 순자산(장부가치)과 비교해 얼마나 높은지 혹은 낮은지를 나타내는 지표., PBR=주가/주당순자산가치(BPS)

는 보충적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②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주가순자산비율 0.8배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시가로 평가하려는 것임.

또한, 최대주주등의 상장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의 적용은 배제하려는 것¹¹⁾임.

[현행과 개정안 비교]

구분	현 행	개 정 안
일반 상장주식	전후 2개월 시장 시가 평균	좌 동
최대주주등의 상장주식	전후 2개월 시장 시가 평균 20% 할증평가 적용	① 저평가(PBR<0.8)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식 적용, 20% 할증평가 미적용
		② 그 외(PBR>=0.8)의 상장주식: 전후 2개월 시장 시가 평균, 20% 할증평가 미적용

□ 참고로, 주가순자산비율(Price to Book Ratio, 이하 PBR)은 기업의 주가가 1주당 순자산가치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PBR이 1배라면 주가가 장부상 순자산가치와 같음을 의미하고 1배 미만이면 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주가가 청산가치(장부가치)보다 낮게 평가받고 있음을 의미함.

□ 2025년 10월 기준 개정안이 제시하고 있는 PBR 0.8배 미만은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2,521개 기업 중 1,053개(41.8%)로 나타남.

11) 2025년도 제429회 정기회 제6차 조세소위원회(2025.11.25.) 이소영의원 취지 반영

[상장사 주가순자산비율 현황]

(단위: 개, %, 2025. 10. 13 종가 기준)

구분	상장사	PBR 0.8 이상	PBR 0.8 미만
코스피	817*	315	502
	100%	38.6%	61.4%
코스닥	1,704**	1,153	551
	100%	67.7%	32.3%

* 외국주권(2), 투자회사(29) 제외

** 외국주권(18), 기업인수목적회사(79) 제외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긍정적인 입법 취지가 있음.

첫째, 상속 또는 증여를 앞둔 최대주주등이 주식가격을 인위적으로 억제할 유인을 제도적으로 완화할 수 있음.

상속 혹은 증여를 앞둔 기업의 최대주주등은 세부담을 덜고자 자사 주식가격이 평가기간 동안 인위적으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유인이 있고, 이들 최대주주등에 의해 인위적인 주가 하방 압력 행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반주주와의 이해관계 상충문제를 일으키고,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¹²⁾.

개정안에 따르면 저평가된(PBR 0.8배 미만) 최대주주등의 상장주식은 기업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¹³⁾으로

12) 오너 2·3세 경영 승계 과정…주가 따라 세금부담, bizwatch, 2024. 4. 25.
<https://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24/04/22/0017>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평가받게 되고, 이 경우 평가금액의 최저한도는 순자산가치의 8할이 되므로 최대주주등이 주식가격을 억제할 유인을 개선할 수 있음.

둘째, 최대주주등의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승계를 원활히 하는 측면이 있음.

특히, $PBR < 0.8$ 미만의 상장주식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한 측면도 있어 보임.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50%)은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는데¹⁴⁾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적용한 상속·증여세율(60%)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와 같이 높은 세부담은 기업인으로 하여금 경영 승계를 포기하게 하거나 재원마련을 위해 주식을 매각하는 등으로 국내기업이 해외에 매각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 현행의 일률적인 할증평가 방식은 개별 기업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¹⁵⁾이 발의되어 우리위원회에 계류 중임.

14) 일본: 55%, 대한민국: 50%, 프랑스: 45%, 미국: 40%, 영국: 40%, 독일: 30%. (기획재정부)

15)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5), 권성동의원안 2024. 9. 23. 발의(의안번호 4177), 박성훈의원안 2024. 10. 17. 발의(의안번호 4741)

□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시가는 다수에 의해 시장에서 형성된 거래가로서 미래 전망 등이 반영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식보다 일반적으로 평가가액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거래소의 시장가격은 기업의 현재 자산가치뿐만 아니라 경영성과, 재무 건전성 등 기업 내부 요인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와 이에 따른 시장 환경 변화 등 외부 요인에 따른 기업의 미래 전망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형성되는데 비하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식에 따른 순손익가치의 평가는 기업이 해체되지 않고 계속營業을 이어갈 경우 과거의 수익력이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전제 아래 산출되는 것¹⁶⁾으로 미래 전망이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주식의 시가가 낮게 형성된 것이 최대주주등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인위적인 주가 하방 압력에 따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시가를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외부 요인 등에 따라 저평가된 기업의 최대주주등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text{주당가액} = 1\text{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div 3\text{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될 수 있음.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불특정다수인 간의 거래가 있으면 그 매매가액을 우선 적용¹⁷⁾하여 평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공개시장에서 수시로 거래되어 시가가 존재하는 상장주식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평가방식의 체계성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점이 있음.

둘째, 일률적인 PBR 지수 기준으로 평가 방식을 달리하는 것은 업종 특성에 따라 상이(相異)한 PBR 지수 성향을 고려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가령, 자산 위주의 산업은 순자산가치가 높아 구조적으로 PBR이 낮게 형성될 수 있고, 미래 성장 기대가 높은 산업은 시세가 높게 형성되어 높은 PBR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음.

2025년 5월 기준 부동산업 평균 PBR은 0.32배, 금융업 평균 PBR은 0.65배로 낮은 PBR을 보이고 있으나, IT 서비스업은 1.40배, 제약산업은 2.95배로 높은 PBR을 보이고 있음.

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업종 특성에 따라 PBR 지수 성향이 다름에도 일률적인 PBR 지수(0.8)를 기준으로 세부담 수준이 달라지는 부분은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점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161

2. 상장주식에 대한 물납허용(이소영의원안, 송언석의원안)

현 행	개정안
□ 물납(제73조) ○ 물납재산의 범위 - 국내 소재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①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②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 가. 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물납충당 재산 순서 - 대통령령*으로 규정 국채·공채→처분 제한 상장주식→국내소재 부동산→유가증권→비상장주식→상속인 거주 주택	□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상장주식 추가 ○ 물납재산의 범위 - 최대주주등의 상장주식 추가 (이소영의원안) - 상장주식 추가 (송언석 의원안) * 송언석 의원안은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순서를 상향 입법

* 이소영의원안 2025. 5. 9. 발의(의안번호 10445), 송언석의원안 2025. 9. 5. 발의(의안번호 12753)

□ 두 개정안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상장주식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소영의원안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최대주주등의 상장주식을 추가하려는 것이고,

송언석의원안은 최대주주등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소 상장주식을 물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참고로, 송언석의원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순서를 상향 입법하고 있음.

- 조세의 물납제도는 조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대체하여 납부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의미함.

조세의 납부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재산이 대부분 부동산, 유가증권 등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의 이행을 현금 납부만 강제한다면 그 이행이 곤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납세의무자에게는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과세관청은 원활하게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물납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은 ‘① 부동산·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의 50% 초과’, ‘②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③ 금융재산이 납부세액 미달’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되고,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국내 소재하는 부동산과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도 가능하지만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은 원칙적¹⁸⁾으로 물납에 충당할 수 없음¹⁹⁾.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는 가능

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최근 5년간 상장된 유가증권의 물납은 없었고, 비상장주식의 물납 현황은 아래와 같음.

[비상장주식 물납현황]

(건,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	18	11	7	15	26
물납금액	48,339	410,262	13,429	4,797,950	282,410

자료: 국세청

□ 개정안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대규모 상장주식을 급히 매각하여야 하는 경우 주가 하락을 유발하고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음.

둘째, 특히 최대주주등의 주식 매도는 해외자본에 의해 적대적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소영의원안에서 최대주주등 상장주식에 대하여 특별히 물납을 허용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이소영의원안에서 함께 제시한 PBR 0.8미만 상장기업에 대한 평가방식 개편(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식)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 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만, 아래와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조세의 납부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임. 물납제도는 예외적으로 부동산 등 처분이 어려운 상속재산에 대해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상속인이 조세 납부를 이행하기 곤란할 때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거래소에서 매매가 용이한 상장주식의 경우 이러한 물납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둘째,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발생하는 상속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업상속의 경우 최대 20년, 일반상속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제도²⁰⁾를 활용할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161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상속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나. 그 밖의 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